

[별표 2] <개정 1999.6.30, 2000.7.1, 2002.3.30>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제8조제3항관련)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수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구 분 및 선임인원	자 격
액화석 유가스 충전시 설	저장능력 500톤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부총괄 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 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 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 다)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부총괄 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 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부총괄 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 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이하 (자동차용 기충전시설 에 한한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충 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 유가스 집단공 급시설	수용가 500 가수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

		<p>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p> <p>2.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천가구마다 1인 이상을 추가</p>	<p>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p>
	수용가 500가구 이하	<p>안전관리총괄자 : 1인</p> <p>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p>	<p>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p>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	<p>안전관리총괄자 : 1인</p>	
		<p>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p>	
		<p>안전관리책임자 : 1인</p>	<p>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안전관리원 : 2인 이상</p>	<p>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p>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	<p>안전관리총괄자 : 1인</p>	
		<p>안전관리부총괄자 : 1인</p>	
		<p>안전관리책임자 : 1인</p>	<p>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안전관리원 : 1인 이상</p>	<p>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p>
	저장능력 30톤 이하	<p>안전관리총괄자 : 1인</p>	
		<p>안전관리책임자 : 1인</p>	<p>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p>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영업소	<p>안전관리총괄자 : 1인</p>		
	<p>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p>	<p>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p>	
	<p>안전관리원 :</p>	<p>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p>	

		1인 이상(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 설중 공동저 장시설	수용가 500 가구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만, 저장설비가 용기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 :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천가구마다 1인 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수용가 500 가구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 용시설 중 공 동저장 시설외 의 시 설	저장능력 250킬로그 램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250킬로그 램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가스용 품제조 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부총괄 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	--

비 고

1. 안전관리자는 당해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는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자격으로 보고, 충전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이수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자격으로 본다.
3. 자격구분중 안전관리책임자 구분란의 자격자는 안전관리원 구분란의 자격을 가진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가격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5.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당해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스용품제조사업의 경우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7.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원의 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8. 사업소안에 특정사용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9.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0.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저장능력의 2분의 1을 감한 저장능력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1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당해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 주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3.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안에서 다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 공동저장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